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12
----------	-------

발의연월일 : 2026. 1. 13.

발 의 자 : 복기왕 · 전용기 · 한정애
김우영 · 이상식 · 이재관
조계원 · 임호선 · 위성곤
여기구 · 윤종균 · 최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22년 기준 약 602만 가구로 집계되었으며,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규모는 2022년 약 8조 원에서 2027년 15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 가운데 반려동물 사료 시장도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 그러나 현행 「사료관리법」은 반려동물 사료를 축산용 사료와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어,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반려동물은 동물 종과 성장단계에 따라 영양기준이 다르고 보호자가 제공하는 사료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영양을 공급받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사료의 유형 구분이나 영양 표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소비자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2

019년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무방부제 표기 제품 15개 중 7개에서 방부제가 검출되고, 2020년 녹색소비자연대 조사 결과 무방부제 표시 프리미엄 사료 16개 중 12개에서 방부제가 검출되는 등 표시사항의 허위·과장 표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미국은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가 반려동물 사료의 영양학적 적합성을 보장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유럽은 유럽펫푸드산업연합(FEDIAF)이 ‘완전 사료’ 표기를 위한 별도 영양 지침을 권고하고 있고, 일본은 2008년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일반 가축용 사료와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려동물 사료의 정의와 유형을 법률에 명시하고, 반려동물 사료의 영양학적 균형과 위해성 요인 분석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반려동물 사료의 공정 설정 시 영양기준과 안전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반려동물 사료의 표시사항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반려동물 사료 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등).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반려동물사료”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용 사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반려동물완전사료: 별도의 영양공급 없이 성장단계별 반려동물의 영양소 요구량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영양 조성이 구성되어 있는 사료

나. 반려동물처방식사료: 반려동물이 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질병·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이나 보충이 필요한 수의학적으로 검증된 사료

다. 반려동물기타사료: 반려동물완전사료 또는 반려동물처방식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사료

제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사료의 유형별 영양학적 균형과 위해성 요인 분석 및 시험·연구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사료와 관련된 사료공정을 설정·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영양기준, 안전정보 및 수의학적 검증사항(반려동물처방식사료에 한정한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반려동물사료의 표시) ①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반려동물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료의 표시사항 외에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영양표시, 등록성분량, 사용 원료의 명칭 등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제1항제11호 중 “제13조제2항을”을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3제2항을”로 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반려동물사료 안전정보망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

동물사료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려동물 사료 안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할 수 있다.

제34조제8호 중 “제13조제2항을”을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3제2항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u>1의2. “반려동물사료”란 「동물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용 사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u> <u>가. 반려동물완전사료: 별도로</u> <u>의 영양공급 없이 성장단계별 반려동물의 영양소 요구량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영양 조성이 구성되어 있는 사료</u> <u>나. 반려동물처방식사료: 반려동물이 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질병·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이나 보충이 필요한 수의학적으</u>

2. ~ 9. (생 략) 제3조(사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 ①·② (생 략) <u><신 설></u>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및 수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제조업자 또는 사료의 수급안정 및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단체(이하 “사료관련 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1조(사료의 공정 등) ①·② (생 략)	<u>로 검증된 사료</u> <u>다. 반려동물기타사료: 반려동물완전사료 또는 반려동물처방식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사료</u> 2. ~ 9. (현행과 같음) 제3조(사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사료의 유형별 영양학적 균형과 위해성 요인 분석 및 시험·연구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 ----- ----- ----- ----- ----- ----- -----. 제11조(사료의 공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고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신 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사료와 관련된 사료공정을 설정·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영양기준, 안전정보 및 수의학적 검증사항(반려동물처방식사료에 한정한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3조의3(반려동물사료의 표시)

①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반려동물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료의 표시사항 외에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영양표시, 등록성분량, 사용 원료의 명칭 등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제25조(제조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1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경우

12. ~ 19. (생략)

② (생략)

<신설>

과장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제조업의 등록취소 등) ①

-----.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 3제2항을-----

12. ~ 1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의3(반려동물사료 안전정보망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사료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려동물사료 안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략) 8. <u>제13조제2항을</u>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자 8의2. ~ 15. (생략)	<u>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할 수 있다.</u> 제34조(벌칙) ----- ----- -----. 1. ~ 7. (현행과 같음) 8. <u>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3 제2항을</u>----- ----- 8의2. ~ 15. (현행과 같음)
---	---